

안산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징수조례 개정안

의안	
번호	800

제출년월일 : 1999. 8.

제출자 : 안산시장

개정주문 : 전부개정

개정이유

'95.5.22 안산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징수조례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개정조례(안) : 별첨

관련법령 발췌서 : 별첨

- 농어촌정비법 제20조
-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사업 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 수반 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 결과

- 예고기간 : '99. 7. 30 ~ 8. 18(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기타 참고사항

- 기준 조례안 : 별첨

안산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 안

안산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비징수 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시설부지인 토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 포획, 채취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제4조(종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종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편 경제통상 제4장 농어촌진흥 안산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안산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 사용료징수조례

(안산시조례 제83호)
1986.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58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 8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유지 관리비
2. 농업용수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500톤마다 당해 시설 몽리지구의 10아르에 해당하는 평균 조합비와 동일한 금액
3. 시설부지인 토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 포획, 채취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제4조(사용료 징수) ①제3조의 규정의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②사용료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 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의 각호에 의한 사용료는 농지개량 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 ①사용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한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편 경제통상 제4장 농어촌진흥 안산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 시설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각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